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52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정태호 · 김현정

민형배 • 진성준 • 오세희

김문수 · 김원이 · 이기헌

이광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는 아동학대범 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미국 「고령자 정의 법(the Elder Justice Act)」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,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 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1항 중 "때에는"을 "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때에는"을 "경우나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
절차 등) ① 누구든지 노인학	절차 등) ①
대를 알게 된 <u>때에는</u> 노인보호	<u>경</u> 우나 노인학대
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	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
고할 수 있다.	있는 경우에는
	<u>.</u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	
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	
를 알게 된 <u>때에는</u> 즉시 노인	<u>경</u> 우나 노인학대를
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	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
신고하여야 한다.	<u>는 경우에는</u>
	,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